

##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12. ~ 2025. 9. 30. (18일간)
3. 대상자

성명	주소	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전*라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번길 13 (가좌동)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00,000원	폐문부재	
정*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16, ***호 (석남동)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200,000원	폐문부재	

4. 공고방법: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의사항: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032-718-5221)
6. 만약,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장

